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6783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	2213284	이해식의원 등 14인	'25.9.26.	상정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11.18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1.26.)
					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2.15.)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	2213605	천준호의원 등 10인	'25.10.16.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1.26.)
					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2.15.)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	2214213	이연희의원 등 17인	'25.11.14.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1.26.)
					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2.15.)

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12. 17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.
- 나.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5항).
- 다.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,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).
- 라.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·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).
- 마.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,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
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
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
4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

제4조제5항 중 “편의 증진”을 “공공복리 증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.
-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

·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허가 또는 변경허가”를 “허가·변경허가 또는 재허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

12의3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

6의3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

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허가 또는 변경허가”를 “허가·변경허가 또는 재허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(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(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)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

실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이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과
협의하여 허가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· ④ (생 략)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제1항·
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
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
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, 재해
방지,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
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
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
있다.

⑥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국립공원

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도립공원

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에
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

4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
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
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
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
의 공원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공공복리 증진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허가·승인의 취소 등) ①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
시장·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
또는 전용궤도운영자(제5조제1
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
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. 이하
이 항에서 같다)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
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

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
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
라 정한다.

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
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
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
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
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 재허
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3
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
준용한다.

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
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허가·승인의 취소 등) ①

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
2. ~ 1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3. ~ 16. (생략)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

-----.

-----.

1. -----
-----허가.
변경허가 또는 재허가-----

2. ~ 12. (현행과 같음)

12의2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

12의3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13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7. ~ 10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
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
니한 경우

6의3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
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
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
등)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
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
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
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
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궤도사
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
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
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
있다.

제3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<u>허가 또는 변경허가</u>를 받은 자 3. ~ 5. (생략) ② (생략)	제32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,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허가</u>. <u>변경허가 또는 재허가</u>----- 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